

제209회 임시회
2003. 2. 14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◦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심 사 결 과 보 고

1. 회부조례안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월 30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2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2003년 2월 12일(제209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)

3. 제안설명요지

-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- 전국단위,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, 관리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, 2004년 12월 31일까지,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, 이를 명시하여, 적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것임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의 개정안은, 교육관련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, 대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,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인력 및, 기간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,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규칙으로 정하는 한시정원 6명의 직급별 내역과, 향후 민원수요가 증가할 때 소요되는, 추가 인력대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,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 련 부 서 : 총 무 과

□ 개정이유

지방교육행정기관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6명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조직·인력 보강 계획
[교육인적자원부 지교 81413-831('02.12.27)]

□ 개정조례(안) : 붙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조표 : 붙임
- 관계법령
 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7조
 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조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한시정원은 12명”을 “한시정원은 6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제3조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한시정원)	제3조(한시정원)
한시정원은 12명	한시정원은 6명